

保 险 実 務

保稅貨物 火災保險制度 改善에 關聯하여

趙 正 守 (本協會 特保 1部 次長)

1. 概 沪 況

우리 나라의 經濟가 輸出主導型으로 轉換하면서 急成長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保稅區域內 搬出入되는 輸出入貨物의 物動量도 增大하여 罷災發生時에 被害額도 大型化하고 있다.

이들 被害를 制度의 으로 補償하기 위하여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가 70年度에 施行된 以後 年度別 付保現況을 살펴보면 70年度 890,867 백만원에 對하여 81,142백만원 付保하여 輸出入金額 全體의 約 9.1%, 71年度 1,291,288백만원에 119' 953백만원 付保되어 9.3%, 72年度 1,650,148백만원에 193,351백만원 付保되어 11.7%, 73年度 2,963,724 백만원에 330,729백만원에 付保되어 11.2%, 74年度 5,475,105백만원에 435,985백만원 付保되어 8.0%, 76年度 7,997,068백만원에 946' 405백만원 付保되어 11.8%, 77年度 6月末 現在 4,228,375백만원에 70 8,719백만원이 付保되어 16.8% 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總輸出入 物動量에 比하여 불과 10% 程度로 保稅保險에 付保되었을 뿐

약 90%程度는 付保對象에서 除外되어 있지 않느냐고 反問할 수 있겠으나 이는 첫째로 付保對象 除外品目의 物動量을 考慮하지 않았다는 點이며 즉, 現行 特約書上 付保對象除外品目을 簡單히 살펴보면, 씨멘트, 원목, 원유, 철강等輸出入貨物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貨物과 둘째로 海上積荷保險(輸入貨物), 動產綜合保險等 其他 다른 保險으로 付保되어 있을 경우에 重複保險으로써 除外品目, 셋째로 輸出增大에 對備 貨物運送이 大型化내지 迅速化하기 為하여 Container로 保稅運送되는 貨物, 넷째로 現行 保稅保險의 適用對象倉庫는 營業用 藏置場에 局限하고 있으므로 因한 自家藏置場, 企業의 系列倉庫에 搬入되는 貨物等이 除外되고 있는 點等 全體輸出入貨物의 約 80% 以上을 占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반면 나머지 모든 貨物이 保稅貨物로서 付保對象임을 考慮할 때 대부분의 貨物이 付保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한편 同貨物의 舉收保險料 및 罷災發生 狀況을 別表에서 簡單히 살펴보면 70年度 舉收保險料 31 백만원, 71年度 84백만원, 72年度

101백만원, 73年度 138백만원 74年度는 211백만원, 75年度 236백만원 76年度 364백만원 77年度 9月 現在 400백만원 舉收된 반면 保險金 支給은 76年度 2件에 3,257백만원을 支給하므로서 罷災率 208.1%을 點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制度의 으로 保稅區域內에 搬出되는 모든 保稅貨物이 빠짐없이 付保될 수 있는 方法은 輸出入 通關節次上에 保險加入 義務化로 할 수 있도록 法的 뒷 받침이 있으면 그 以上 바람직한 方法이 없겠으나 이와 같은 方法을 强求하지 않는限 現在 주어진 與件에서 그동안 施行한 經驗을 토대로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改善에 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改善作業은 76年度 釜山大火를 契機로 하여 지난 5月 財務部의 指示에 依據 第1次의 으로 當協會 内部에 小委員會(業務部, 企劃調查部 特保 1部 監查室)를 構成하여 6回의 會議를 거쳐 草案을 作成, 이를 原受會社 小委員會(第一, 東方, 高麗, 國際社)에 回符시켜 4次의 協議를 하여 火協의 草案을 土臺로 再調整同

結果를 다시 3회의 原受社, 業務部長會議, 2次에 걸친 財務部, 國稅廳, 港灣廳 貿易協會 및 關稅協會等 關係機關會議를 거친 후 結定된 案을 간사사인 東洋社를 通해 損害保險協會內에 있는 料率審議委員會에 回附하는 等 그 동안의 會議에 나타난 問題點들은 關係者들의 理解相衝에 依하여 難行을 거듭, 同制度改善案을 確定 財務部에 承認을 받아 施行하게 된 것이다.

2. 保稅保險制度의 背景 및 經緯

1970年 4月에 發生한 釜山 第2埠頭火災의 被害額 350백만원을 政府가 補償하고 이를 契機로 하여 保稅區域內에 搬入되는 모든 保稅貨物이 火災로부터 保護할 수 있는 大統領閣下의 特別指示에 따라 財務部가 付保方案을 作成, 經濟長官會議를 거쳐 同保險開拓指示를 70年 4月에, 基礎書類認可를 5月, 倉庫設營人과 代理店契約締結을 8月, 代理店制度에서 委任協約制度로 75年 3月에 變更施行하여 왔으며 한편 同保險制度가 政策保險의 一種으로서施行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다 確固한 基盤과 根據위에서施行되기 위하여서는 法的 뒷받침으로서 特殊建物과 같이 付保義務化된 法律이 있었으면 하는 점과 特히 關係行政機關의 認識不足等 여려가지 問題點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同保險은 保稅區域內에 搬出入되는 모든 貨物은 保險에 付保시켜 不意의 災害로 부터 輸出入業者를 保護하려는 政府의趣旨에 立却하여 볼 때 70年度 初般의 우리 나라의 輸出入與件 即, 그 동안 貨物의 多樣化, 物動量의 増加等 經濟

與件이 너무나 많이 變하고 있었음에 不拘하고 同保險制度가 踏步狀態에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는 實情에 있었다. 특히 現行 委任受任關係는 初期에 金融 pool과 各保稅藏置物 設營人과의 代理店契約에 依하여 施行되어 오던 中 75年度 損害保險事業 經營刷新에 의하여 金融 pool이 火協에 統合되면서 從前의 代理店制度下에서 金融機關 및 保稅倉庫 設營主와의 同代理店手數料 支給을 禁止시키므로서 金融機關 및 保稅倉庫 設營主와 委任契約을 締結하여 保險業務의 受任處理上의 必要費 또는 유익비를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範圍內에서 支給하도록 하는 等 施行課程에 여러가지 與件變動으로隨時 補完하여 왔다.

3. 同保險의 特徵

同保險의 特徵을 簡單히 살펴보면
가. 制度自體의 特徵

① 任意保險이 아닌 政策保險이며

② 自己를 爲한 保險契約이 아닌 第3者인 貨主를 爲한 保險契約이며

나. 保險契約當事者的 特徵

① 倉庫設營主가 火協의 受任者인 同時に 保險契約者이고, 貨主는 被保險者이며

② 受任者(保險者的位置)와 保險契約者 및 倉庫設營主로서의 責任限界性

다. 契約締結의 方法의 特徵

① 一般火災保險과는 달리 請約書에 依한 保險契約이 아닌 日日入庫報告書에 依하고 있으며, 保險證券을 發行치 않은 점.

② 責任開始時點은 保稅藏置場에 搬入과 同時に 責任開始하여

出庫 同時に 終了하며

③ 保險料를 契約締結時に 納入하는 것이 아니며 貨物의 出庫와 同時に 保險料請算을 하는 事後納入等을 들 수가 있다.

4. 問題點

同保險의 特殊性에서는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保稅保險이 70年度에 施行되어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簡單히 살펴보면

가. 制度上의 問題點

① 政策保險의 一種임에도 不拘하고 法的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으며 ② 倉庫設營主의 理解相衝即, 保管業이 主業인 倉庫設營主는 貨物留置에 急急한 나머지 付保業務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③ 倉庫設營主의 責任限界性不明確, 即 火協의 受任者인 同時に 貨主를 爲한 保險契約者의 位置에 있으며 ④ 火協의 受任者로서의 管理태만에 對한 責任限界不明確.

나. 特約書의 未備

① 保稅藏置場의 概念不明確即, 現行 特約書 第2條에 保險의 目的을 保管하는 保稅區域倉庫 또는 其他 藏置場이라 規定함은 關稅法上 또는 特約書上 保稅區域倉庫 用語의 定義가 明確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其他 藏置場이라 함은 具體적으로 어떤 藏置場을 意味한 것인지 不明確하게 되어 있으므로 마치 設營主가 火協과 協約이 緒結되지 않은 藏置場에 保管하는 모든 貨物까지 保險에 付保한 것처럼 誤認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서 罷災發生時に 保險의 目的物을 保管하는 場所의 概念이 不

明確으로 因한 混難을 惹起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年度에 이와같이 規定한 것은當時의 우리나라의 輸出入貨物의 物量이 그렇게 많지 않은 與件이라는 點을考慮할 때 輸出入貨物은 반드시 保稅倉庫에 搬入될 수 있으므로 同規定만으로充分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輸出増大는 每年 平均約 40% 急伸長을 하고 있는 點을考慮할 때 이와같은 與件에 맞추어 保稅保險制度의 運營내지 制度改善에 소홀히 한 點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6年度 釜山大火發生直前 까지만 하여도 輸出貨物의 경우 輸出의 于先政策에 依하여 적당한 場所에 일단貨物을 藏置하고 關稅法에 依하여, 他所藏置許可를 받아 輸出을 하던 方法에서 大火發生以後 釜山의 경우 管轄 稅關에 依하여 他所藏置許可를 規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過去一定한 場所에서 繼續하여 他所藏置許可를 하던 藏置場은 關稅法에 規定한 特許藏置場으로 조건을 갖추어 許可를 받도록 行政的으로 유도하는등 여려 가지 政策의 次元에서 規制를 하므로써 付保業務에도 상당한 協助를 아끼지 않고 있다.

② 保稅貨物의 定義의 不明確

特約書上에 나타난 用語를 검토하여 보면 特約書本文에 保稅貨物이라고 하고 各條文에는 輸出入貨物 및 貨物이라고 用語를 同時に 表現하므로써 用語의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保稅貨物의 定義를 料率에 關한 規定에 定義되어 있으며 輸出入貨物의 用語의 定義역시 전혀 規定되어 있지 않는點이다.

③ 保險契約의 成立時期와 責任開始：特約書 第3條에 倉庫設營人은 保險契約請約書에 選을 할 保險의 目的인 輸出貨物의 入出庫狀況을 別途로 定하는 日日入出庫狀況表로 作成하여 稅關 특파 公務員의 確認을 받아 前日分을翌日까지 火協에 送付하도록 하고 第4條에서는 責任은 藏置場에 貨物이 搬入된 때에 開始하며 搬出할 때 끝나는 것으로 각각 規定하고 있으므로서 同一 貨物에 對하여 責任開始時點이 2個로 되어 있는 混難을 惹起시키고 있는 點을 들 수가 있다.

④ 補償의 範圍

特約書 第8條에 輸出貨物의 경우에 保險의 目的에 罷災가 生긴경우 火協에 報告되지 아니한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는 特約第3條의 報告書에 記載된 마지막 搬入日後에 搬入된 貨物로서 罷災가 發生하기 前에 倉庫設營主의 帳簿또는 카드에 記載되어 있거나 稅關特派公務員이 認定하는 것에 限하여 補償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指定 保稅區域 내지 特許藏置場인 경우에는 第3者가 認定할 수 있는 貨物臺帳(管轄稅關廳印이 찍혀있는 臺帳임)에 搬入되는 모든 貨物을 記載하고 同結果에 依하여 管轄 稅關내지 特派公務員의 確認을 받고 있으므로 信憑性 있는 資料로 利用할 수 있으나 他所藏置許可 對象倉庫인 경우에는 많은 問題點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보다 明確하게 規定하여야 할 點을 들 수 있다.

특히 第3條에 搬入報告書의 提出時に 特派公務員의 確認問題만 하더라도 이는 現在 各管轄稅關의 人員부족에 의하여 特派公務員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事實上 搬出

入 報告書提出時に 반드시 確認을 받을 수 없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더욱이 他所藏置許可藏置場의 경우에는 各倉庫設營人이 作成한 搬出入報告書 또는 其他帳簿等을 어느 程度 正確性을 期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疑問과 罷災發生時補償의範圍를 어떤 資料에 依하여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없지 않다.

다. 監督機關의 認識缺如

① 管轄稅關의 付保指導내지 同保險의 認識缺如로 因한 監督上の 소홀, 即 管轄稅關의 付保指導내지 監督은 管轄稅關의 人員부족으로 因하여 70年度에는 各倉庫에 特派公務員이 駐在함과 同時に 釜山大火로 因한 認識等 여러 가지 要素가 作用하여 協助가 잘 되었으나 그동안 時間의 흐름과 同時に 擔當者들의 認識不足 특히 一線對民關係에 가장 접촉이 많은 一線稅關의 立場에서 볼 때 찾은 人事移動에 依한 擔當者들의 同保險制度 未把握 輸出貨物의 增加에 따른 稅關公務員의 人員不足으로 因하여 各 保稅倉庫에 駐在하고 있던 特派公務員을 撤收시키고 巡察制度로 轉換함에 따른 監督의 여러 가지 어려운點이 없지 않았으며 一部 擔當者들은 稅關이 火協의 保險料를 받아주는 곳이냐 하고 反問할 程度로 同保險制度를 認識하지 못하는 實情임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76年 釜山大火를契機로 하여 어느정도 認識을 달리하고 付保에 어느 程度 協助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좋은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② 港灣管理廳 및 埠頭管理協會의 同保險運營management의 未治

埠頭管理協會는 指定保稅區域 管理人으로서 指定保稅區域內에 搬出入되는 모든 貨物에 對하여 善意의

管理者義務를 갖고 있으나 一部管理人の 경우에 管理하고 있는 地域内에 貨物이 搬出入되고 있는 物動量

도 正確히 把握할 수 있는 制度가 自體內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狀況에서 同保險付保業務에 正

安保的 次元에서 본 우리 職場과 나의 使命

金化基
(光州支部·次長)

지난 6月 本協會의 業務能率提高를 위해 懸賞募集된 論文中
management部分에서 당선된 작품하나를 여기 소개한다.

“鐵의帳幕” 또는 “竹의帳幕”하면 世界 第二次大戰以後 東西로 分離對峙되었던 思想의 또는 理念의 冷戰體制의 代表적인 말로써 蘇聯과 中共을 指稱하였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思想 또는 理念的概念은 30年前에 많은 變遷을 가져왔다. 民主와 共產의 冷戰體制에서 富國과 貧國을 갈라놓는 南과 北의 體制로 차츰 變遷되어 간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國際的 變遷속에서 우리 나라의 立地의 與件과 周邊 情勢의 變化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가. 北韓 中共 蘇聯과는 休戰이 한 防柵으로 戰爭前夜의 고요함과 같이 一觸即發의 休戰線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과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東西冷戰의 友邦으로서 存立하였으나 지금은 차츰 南北體制의 對峙方向에서 相互經濟戰爭에 突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點에서 考察하였을 때 日本의 親韓의 人物이었던 福田首相이 왜 獨島의 領有權을 터무니 없이 主張하고 나선 背景과 底意를 다음과 같이 쉽게 풀이할 수가 있다고 본다.

- (1) 漁撈專管水域 200해리 宣布에 따른 利害關係
- (2) 北方四島嶼(蘇聯) “센가구” 列島(中共) 獨島(韓國) 등을 一括處理하는 方向에서 經濟的 利益을 追求하자는 底意.
- (3) 地形的으로 獨島地域이 海底山岳이 隆起露出되어 새로운 群島形成의 可能性이 있다는 地理的인 條

件。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經濟的 理由로 獨島가 韓國領임이 明確함에도 不拘하고 어제의 盟邦인 日本이 相互間의 信義도 헌 신작같이 저바리고 나선 經濟的 行動이야 말로 南北體制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며 世界各國이 經濟的 利害關係 앞에는 무엇이든 犠牲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銘心하여야 할 것인가.

過去와 같이 一旦有事時에는 盟邦이 支援하고 友邦國이 援助하여 주겠지 하는 思考方式은 東西冷戰體制下에서는 볼 수 있었던 하나의 遺物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變遷된 南北體制下에서는 有備無患의 걸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冷嚴한 現實을 直視 할 줄 알아야 되겠다.

1. 自主國防 2. 自立經濟

우리의 存立을 우리들 스스로가 守護하고 國家가 繁榮하기 為해서는 以上的 두 가지 말以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도 其間의 끼 噴어린 努力으로 經濟的 次元에서 世界的으로 中進國에 突入하였다고 生覺한다. 外貨保有高도 35億 \$ 輸出實績도 今年에는 100億 \$이突破될 展望 國際收支黑字도 눈앞의 出發이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國力이구나 하고 實感하게 된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다. 모처럼의 좋은 이 機會를 汎國民의으로 團結하여 밀고 나아가야겠다 外貨保有額의 增加 重工業 產業力의 急速한 伸張 人力輸出로 因한 外貨 稼得等 內資膨脹 要因으로 因한 “인프레”誘發의 可能性을 우리가 이 時點에서 잘 살기 為해서는

1. 儉素한 消費姿勢

2. 節約하는 生活氣風

3. 賽蓄하는 國民像을 振作시켜

國民 각者가 內資動員의 役軍이 되어 “인프레”를 防止하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함은勿論 國際收支 競爭力의 弱化를 最善을 다하여 防止함과 아울러 國力

確性을 기한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實情에 있음을 言及할 必要가 없다.

即, 同指定保稅區域 管理人이 同地域內에 摺入되는 모든 貨物에 대하여 貨物이 어느 場所에 얼마만한

量의 貨物이 있는지도 把握할수 有 는 狀態일 뿐 아니라 어떤 貨物이 언제 通關되어 언제 摺出되고 있는

伸張에 總邁進하여야 되겠다.

77年度 우리 保險人의 內資調達額은 총합이 1兆원 !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 保險人은 內資動員의 役軍이
라는 使命感과 務持를 살려 期必코 이를 達成하여야
한다.

英國의 某著名人事는 “韓國의 繁榮은 4次 5個年 計劃의 達成與否에 있고 4次 5個年 計劃遂行의 成敗는 內資動員의 與否에서 決定된다”고 記述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考察할 問題는 內資의 重要性이 어떻게
한 것인지 充分히 認識하게 되었고 舉收保險料와 內
資와는 絶對의 函數關係가 成立된다는 事實도 알수
있게 되었다.

協會運營費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保險料의
舉收增大가 重要하다는 拙劣한 思考方式은 拂拭되어
야 하겠다. 巨視的인 觀察과 安保의 次元에서도 우리
職場은 國運을 兩肩에 걸친 內資動員의 役軍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舉收保險料의 極大化를 期할 것인가. 바로 本文의 焦點은 여기에 集約된다.

“保險料 舉收增大方案”

協會業務의 性貨上 保險料 舉收方案은 金融部分과 特建部分으로 分類하게 된다. 金融部分은 우리의 創意力이나 努力으로서는 舉收增大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記述을 省略한다. 特殊建物의 舉收增大는 우리의 創意力과 努力으로 어느 程度可能한 点이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記述하여 본다.

1. 漏落된 新規對象物件를 徹底히 發掘한다.

(方案)

光州支部에서는 이미 施行하고 있는 事實인바 光州消防署와 두터운 協力體制를 維持함으로써 概築建物도 消防設備検查 同意要請書 또는 危險物 取扱許可關係書類가 備置되어 있기 때문에 其中에서 特建對象物만 拔萃通報를 받아 이미 點檢이나 契約業務가 安了되었으며 新築建物도 竣工検査前에 消防設備 合格与否의 同意를 求하기 때문에 對象物만 發見되면 即時連絡을 받고 있으므로 對象物 漏落은 徹底히 防止되

고 있음.

특히 新規物件 發掘을 為한 職員의 勤員도 없기 때문에 能率向上에도 一助가 되고 있음.

2. 工場物件의 機械價額을 現實化시킨다.

(方案)

特建對象 工場物件은 거의 決算法人이기 때문에 決算公告 貸借對照表上의 機械價額에서 減價償却充當金만 控除하고 全額計上하여 財源으로 確保한다.

(1) 當該工場에서 決算公告를 行한 公告日字와 揭載新聞名을 알아서 資料로 拔萃確保한다.

(2) 1項이 어려운 때는 管轄稅務署에 協助依賴公文을 發送하고 稅務署에서 資料를 確保하도록 措置한다

3. 契約未盡한 아파트, 市場物件을 一掃한다.

本對象物은 個個人의 擔當職員만으로는 人力上 恒常未洽하다. 適當한 日時를 周期적으로 選擇하여 全職員을 勤員組를 編成하여 3.4人の 1組를 物件別로 責任을 負荷集中的으로 契約을 勸誘하여 未決을 一掃하는 方案과 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4. 點檢과 契約業務의 効率的運營

2次點檢부터서는 契約部署의 提示資料(年中 契約者別 滿期日表)에 依據 滿期日 1個月前 點檢을 實施함으로서 同 結果에 依한 最近의 正確한 資料로서 契約이 이루어 지도록 協助體制를 構築하여야 한다.

發展的 씨서비스 向上方案

1. 初期鎮火를 為해서 消火器 使用法을 點檢現場에서 職員으로 하여금 直接 使用하여 示範을 보여 주고 (所有者는 購入 備置한 하였지 充藥代關係로 實際使用은 하여 보지 못하고 말로서만 說明을 들었을 뿐이어서 實際有事時에는 당황하여 充분히 使用을 못하는 傾向) 同示範으로 因한 充藥은 協會에서 負擔하는 方案.

2. 罷災金의 迅速하고 親切한 支給으로 協會像의 再定立方案 研究. “吾”

西紀 1977年 6月 28日 作成

지도 把握할 수 없는 程度의 狀況에서 付保를 誘導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 당연하다고 判斷되어 協約을 解止하여 同結果를 關聯監督機關에 通報함에 따라 監督機關이直接指定保稅管理運營細則을 만드는等 諸般措置를 取하여 補完한 바도 있다.

라. 運營 및 管理上의 消極性
① 設營主에 對한 監督 내지 統制機能 未洽

② 付保業務指導의 統一性缺如等을 들 수가 있겠으나 이는 火協이各保稅倉庫設營主에 對한 監督上에 있어서 同保險의 趣旨에 立却하여科學의이고 보다 細密한 分析研究檢討할 時間의 여유가 없음에도 否定할 수 없으나 特히 特保 1部內에 1個課로서 서울地域內에 所在하고 있는倉庫에 대한 營業에도 急急한나머지 制度運營 내지 監督上의 研究가 缺如된 狀態에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이에 對한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料된다.

5. 改善 方向

同 保險制度를 根本的으로 研究檢討하게 된 것은 76年 釜山大火를契機로 하여 現在 委·受任 制度를檢討내지 制度改善을 하여 이에 따른問題點을 改善하라는 財務部의指示에 依據 이를 具體的으로 檢討하게 된 것이다.

同 改善方向이 財務部로 부터 示達되기 까지 當協會와 財務部關係者들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方法이 檢討되었으나 그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現行制度를 廢止하고 原受會社가 直接 다른 保險種目으로 引

受하는 方法

둘째, 倉庫主 賠償責任保險, 積荷保險 및 運送保險의 延長擔保等이 臨頭되었으나 同保險制度가

① 輸出入業者를 不意의 災害로부터 保護를 為한 政策保險의意義를喪失하게 된다는 點과

② 倉庫設營主 賠償責任保險等은 貨物이 多樣하여 적정 保險價額을 算定하여 付保하기가 困難할뿐 아니라 設營主의 零細性으로 一時에 保險料 負擔이 過重하여

③ 付保 漏落 possibility이 常存하여

④ 各保險會社의 消極性 内지 保稅保險 引受忌避 傾向等이 없지 않다는 點等 여러가지 問題點이 摺頭되어 同保險制度가 輸出入貨物을 不意의 災難으로부터 保護 輸出增大를 도모하려는 政策의 次元에서 施行되고 있는 點을 考慮 廢止가 어려운 實情임에 堪案 法律에 依하여 強制付保토록 하지 않는限 他種 保險으로 轉換하여도 付保漏落 또는 無保險貨物이 繼續 發生할 것으로 判斷되어 結局 現行 制度를 補完하게 된 것이다.

6. 改善 内容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改善方向의 設定基準에 依하여 現行制度改善內容을 簡單히 檢討하여 보면

가. 現行 委·受任 制度를 廢止하고 倉庫設營主를 保險契約者로 하여 火協과 倉庫設營人間에 協約締結 即 委任, 受任關係에 依한 問題點을 廢除하기 為하여 倉庫設營主가 貨主를 為한 保險契約者로 하고 貨主의 委任與否를 不問하고 貨主를 為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한 것으로 하고 이를 火協이 承認한 것.

으로 規定하므로 保險者의 立場을除去하고 保險契約者의 立場에 두므로 倉庫設營人の 責任界限를 明確히 한 點이며

나. 特約書의 補完

① 藏置場의 概念을 保稅區域倉庫 또는 其他 藏置場이라 規定하고 있는 것을 改正案은 關稅法 第65條에 規定한 指定保稅區域 및 特許保稅區域中 營業用 保稅倉庫, 營業用 保稅藏置場 및 保稅展示場과 同法第67條에 依하여 他所藏置場許可를 받아 保稅貨物을 藏置하는 建物 또는 場所로서 그 所在地, 構造, 級別名稱 및 圖面을 別表 藏置場明細表에 記載하여 協約締結된 場所라고 明確하게 規定한 點特히 他所藏置場의 경우 火協의 (案)에서는 藏置場概念에서 除外하게 된 主要理由는

첫째,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現在 管轄 稅關에서 可能한 他所藏置의 許可를 制限하고 있으며,

둘째, 各管轄 稅關의 監督上의 問題 即, 一線 稅關의 人員不足에 依하여 他所藏置 許可를 할 境遇에 일일이 確認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元來 保稅區域을 關稅法에 依하여 設定한 主要한 理由中의 하나가 保稅區域內에 輸出入貨物을 搬出入시 키므로서 稅關監督下에 두기위한措置인 만큼 可能한 保稅區域에 搬入시키기 為한 一環策으로도 他所藏置를 不許하고 있으며 그 實例가 釜山의 境遇에 13개의 一般藏置場에 對하여 他所藏置 許可를 해준던 것을 76年 11月부터는 일체 不許하고 있으며 施設을 補完한 4개는 特許藏置場으로 許可를 해준 것이 그 實例가 있다.

둘째, 他所藏置場 許可의 파악間

이는 他所藏置物 허가는 관稅法에
의하여 輸出하고자 하는 貨物에 對
하여 同一場所內에서도 貨物에 따
라 그때그때에 隨時로 허가를 받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火協의
立場에서는 他所 허가된 貨物을 과
약하여 契約을締結하여야 하는 어
려운 實情에 있으며,

셋째, 協約은 藏置場에 入庫時點
에서 付保토록 誘導가 不可能할뿐
만 아니라 帳簿等에 備置가 되어 있
지 않으므로 付保作業 내지 累落을
未然에 防止할 수 없는 實情에 있
으며,

넷째, 關稅法上 他所藏置 허가는
관례상 貨主내지 通關業者가申請
할수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貨主自身이
貨物管理上 付保必要性을 느
껴直接 火協에 付保 要請할 수 있
으므로 이는 구태여 協約을 締結할
必要가 없는 點等을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은 結果를 關係機關 會議에
불인결과 貿易業者の 代表인 貿易
協會의 強力한 反對에 부딪쳐 다음
과 같은 條件下에서 받아 드릴것을
前提條件으로 한 것이다.

첫째, 倉庫設營主의 事前 付保要
請이 있을 경우에 限定하였으며,

둘째, 保險契約 成立時期에서도
搬入報告書를 火協에 提出한 것에
限하여 保險契約이 成立되도록 制
限을 두었으며,

셋째, 搬入搬出의 定義에서도 搬
入出 報告書를 提出한 때로 规定하
였으며,

넷째, 補償의 範圍는 倉庫設營
主가 火協에 搬入報告書를 提出한
것에 限하여 補償하도록 하는 等諸
般規定을 明文化하여 明確히 하였
다.

한편 指定保稅區域中 關稅協會管

轄 各 稅關構內 倉庫의 境遇 別途
包括契約을 締結한 藏置場에 對하여
서는 藏置場의 概念에서 除外시
켰다.

이는 現在 全國 取扱件數의 約
40%가 同構內倉庫의 貨物인 反面
學收保險은 全體의 約 5%밖에 占
有하고 있지 않은 點과 同指定管
理人으로 指定된 關稅協會의 境遇
에 取扱業務量 過多에 依하여 別途
包括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Container 藏置場의 貨物
集荷所(Container Freight Station)
內에 搬入되는 貨物만을 付保對象
으로 할 수 있도록 藏置場의 概念
을 明確히 하였으나. 이는 輸出貨
物의 物動量의 增加에 따른 大量運
送(Mass transportation) Container
에 依存함에 따라 Container藏
置場의 一部인 貨物野積場(Container
yard)에 搬出入되는 貨物은 대
부분이 滿載(Full Container) 되어
船積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머물
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同場所에서 通
關節次를 取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場所에서 通關節次가 끝난 貨
物로서 개봉되지 않는 狀態에서 付
保對象으로 하였을 경우에 貨物의
數量, 品名, 減價 等을 確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貨主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倉庫設營人이 保管料 역
시 반지 않은 點과 保險料를 徵收
할 수 없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付
保對象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이 存在하고 있다.

② 保稅貨物의 定義, 現行特約에
서는 特約書의 本文에 同貨物의 定
義를 두지 않고 別表의 特別料率
에 關한 規定에 定義 지어 있는 것
을 改正案에서는 本文에 新設, 即
特約 締結된 藏置場에 搬入된 物品

으로서 外國物品(輸入免許된 物品
포함) 輸出하고자 하는 物品으로 規
定하여 用語의 統一을 期하였으며

③ 關係機關의 協助: 現行 特約
에서 1個月前에 書面通知로서 解止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改正한
特約의 解止 實効는 相對方의 한側
에서 事前에 期日을 定하여 書面通
知를 하므로 解止할 수 있으나 반
드시 事前에 關稅廳長에 通報하도
록 規定하므로서 協約의 狀況을 誠
實히 履行하지 않아 發生되는 여러
가지 問題點을 關係機關의 指導내
지 行政措置로서 誘導할 수 있도록
한 點이며 또한 搬出·入 報告書를
火協에 定한 別途의 樣式을 使用하
게 함으로서 倉庫設營主들이 管轄
稅關에 提出하는 搬出·入 報告書作
成의 이중作業을 하므로서 이로 因
하여 發生하는 여러가지 問題點
即 付保累落 造作 및 業務量 過多
等을 考慮하여 改正案은 稅關報告
書寫本으로 代替할 수 있도록 하여
管轄稅關의 報告書와 언제던지
Cross check, 付保漏落 내지 造作
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料率調整

現行 料率에서는 件當 最低 保險
料가 50원에서 200원으로 引上 調
整하는 한편 野積 및 虫간요율을 現
行 3級 요율의 20%을 割增加算하
여 新設하였다.

라. 運營制度의 改善: 過去의 倉
庫設營主가 搬入搬出 報告書를 火協
에 提出하는 制度, 即 消極의 業
務運營에서 各倉庫擔當者를 두어 每
日 倉庫를 巡回하여 同業務에 따른
諸般付保業務의 指導等을 通한 積
極의 業務로 轉換하는 한편 各倉
庫設營主들이 任意로 發行하고 있
는 領收證等을 統一하여 付保漏落

내지 造作을 事前에 check 하므로
서倉庫設營主들이 付保業務에 적
극적으로 參與토록 誘導하여야 한
다. 특히 이와 같은 方法을 今年初
부터 서울 및 釜山地域에서 實施한
바에 依하면 舉收實積이 잘反映되
고 있다.

7. 結論

同保險制度가 70年부터 施行된
후에 그 동안의 우리나라 經濟與件
이 너무나 顯著하게 달라 了음에도
不拘하고 그 동안의 同制度의 運營

上에 發生되고 있는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여 왔으나 76年度 釜山大火
를契機로하여 이번에 根本的으로
改善을 推進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앞으로 同改善案에 依하
여 業務를 隨行하는 過程에서 實務
上에 예기치 못한 問題點이 發生하
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때그때에 補完되어야 할 것
이다. 한편 同制度改善도 重要하지
만 同制度의 運營이 더욱 重要하다

특히 同業務를 隨行함에 있어서
擔當者들의 資質向上 即 實業實務
業務를 專門機關에 委託教育을 通

하여 倉庫設營主 내지 貨主를 Lea
der 할 수 있는 能力を 開發시켜야
하며 同保險과 關聯된 海上, 運送
火災等 綜合的인 保險知識의 基盤
위에서 保稅保險制度의 特性에 알
맞게 適用할 수 있는 能력을 갖춘
擔當者들의 確保問題等 여려가지問
題가 아직도 常存하고 있으므로 이
를為한 적극적인 劇발침이 先決되어
야 한다.

끝으로 同保險制度 改善을 为
하여 參여하신 關係者들의 協助에 對
하여 深甚한 謝意를 드리는 바입니다.

년도별 수출입 대 부보 현황표(I)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별	합계(A)		부보금액 (B)	대비 (B/A)
	\$	₩		
1970	2,819.2	890,867.2	81,142	9.1%
1971	3,461.9	1,291,288.7	119,953	9.3
1972	4,146.1	1,650,147.8	193,351	11.7
1973	7,465.3	2,963,724.1	330,729	11.7
1974	11,312.2	5,475,104.8	435,985	8.0
1975	12,355.4	5,980,013.6	525,876	8.8
1976	16,488.8	7,997,068	946,405	11.8
1977. 6.	8,718.3	4,228,375.5	708,719	16.8
계	66,767.2	230,476,589.2	3,342,160	11.0

년도별 거수보험료 대 지급보험금 대비표(II)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별	거수보험료 (A)	지급보험금 (B)	대비(B/A)
1970	31	—	(%)
1971	84	—	
1972	101	—	
1973	138	—	
1974	211	—	
1975	236	—	
1976	364	3,257	894
1977. 9.	400	—	
계	1,565	3,257	208

지역별 거수실적 대비표(III)

단위: 천원

구분 지역별	76년도거수 (A)	77년도거수 (B)	대비(B-A) (A)
서울	67,164	100,457	49.57%
부산	149,905	245,793	63.97
대구	8,583	9,956	16.68
인천	34,186	44,052	28.86
계	259,787	400,258	54.07

※ 주: 1976년 9월 말 현재 거수실적 대 1977년도
동월 대비임.

지역별 참고 현황표(IV)

1977. 9. 30 현재

구분 지역별	창고 수	담당 인원
서울	13	9
부산	37	6
대구	3	1
인천	23	2
마산	1	—
계	77	18

〈完〉